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6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윤준병·서영석·박희승

허 영ㆍ허종식ㆍ서영교

박민규 • 문대림 • 김태선

강준현 · 조계원 · 민형배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9%에 달함.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과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 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 신설, 제29조의3제1 항제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산지은행"이란 산림소유구조 개선 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원활한 산지 공급과 안정적인 사유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홍원에 설치하는 산지은행계정을 말한다.
- 10. "산지은행사업"이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6조의3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고유계정과 구분되

- 는 계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과 임업인·독 림가·임업후계자(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 1.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 2.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
 - 3. 산림경영복귀 지원사업
 -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 5.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 6. 산지은행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 지원 사업
- 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출연

- 3.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4. 자산운용수익금
-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 ②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산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 2. 그 밖에 산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 제6조의5(산지은행에 대한 보고 및 검사) 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산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이 명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장에 대하여 산지은행사업의 추진과 산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6(산지매매사업 등) ① 산림청장은 독림가·임업후계자(이하 "전문임업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

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 2.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 금의 지원
- ② 산림청장은 전문임업인에게 산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의 추진절차,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사업) ① 산림청장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산지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과 산림조합에 우선적으로 임대할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① 제6조의7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산림경영에 복 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6조의6에 따라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지의 환매(還買)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산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 는 분리·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

차, 기술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지등"이라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산림청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 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에 대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제6조의11(산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貨)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6부터 제6조의10까지 및 제6조의1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등에 드는 자금 을 제6조의2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에서 융자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6조의6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 ③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① 산지은행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산지은행의 재산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산지의 운용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림청장과 협 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국유림으로 편입·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무상으로 국유림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지은행사업

제33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임차료 를 지원받은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8제2항 후단 또는 제6 조의9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 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 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업을 말한다.

2. ~ 8. (생략) <신 설>

<신 설>

개 정 아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ㅣ,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 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 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 교육센터의-----

2. ~ 8. (현행과 같음)

9. "산지은행"이란 산림소유구 조 개선 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원활한 산지 공급과 안정적인 사유림경영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설치하는 산지은행계정을 말 한다.

10. "산지은행사업"이란 한국임 업진흥원이 산지은행을 운용

<신 설>

 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6

 조의3 각 호의 사업을 말한

 다.

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 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고 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계 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은행계정 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한국임 업진흥원은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 장과 임업인·독림가·임업후 계자(이하 "임업인등"이라 한 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u><신 설></u>

<u>다음 각 호의 산지은행사업을</u> 수행한다.

- 1.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 2.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 탁사업
- 3. 산림경영복귀 지원사업
-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 5.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 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 6. 산지은행운용에 필요한 자 금 조달과 관련 지원 사업 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 다.
 -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출연
 - 3.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 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4. 자산운용수익금
 -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

<신 설>

른 녹색자금

- ②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산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 2. 그 밖에 산지은행사업을 위 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제6조의5(산지은행에 대한 보고 및 검사) ① 한국임업진흥원장 은 산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 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 장에 대하여 산지은행사업의 추진과 산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은행사 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를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 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 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 는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 2.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필요한 자금의 지원
- ② 산림청장은 전문임업인에게 산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 업의 추진절차,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사업) ①
 산림청장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 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 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산지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과 산림조합에 우선적 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 여하는 자에게 산림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임대차 대상자의 선정과 임 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

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 경영 복귀 지원) ① 제6조의7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 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6조의6에 따라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경우에는 그 산지의 환매(還質)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받은 산림청장은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산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

<u><신</u>설>

<신 설>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 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 으로 정한다.

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 •합병 등) ① 산림청장은 산 림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 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 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 •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 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기술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 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 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 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 하 이 조에서 "산지등"이라 한 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 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산 림청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에 대 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 를 요구할 수 있고, 산림청장 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 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 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11(산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
하고 있는 산지를 임대·사용
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그 임대·
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
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 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 업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를 담 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 를 압류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위험부담금

<신 설>

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6부터 제6조의10까지 및 제6조의1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등에 드는 자금을 제6조의2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에서 융자할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6조의6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 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 ③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① 산지은 행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임업진 흥원은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임업 진흥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산지은행의 재산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 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신 설>

3. ~ 9. (생략)

② ~ ⑤ (생 략)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 에 따라 등록 · 관리하는 산지 의 운용실적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국유림으 로 편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국유림으로 편입 · 관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무상으로 국유림 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업) ① -----

- 1. (현행과 같음)
- 2. 산지은행사업
- 3. ~ 9.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u><신 설></u>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받은 자
<u><신 설></u>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u>방법으로 제6조의8제2항 후</u>
	단 또는 제6조의9제1항에 따
	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